

제 정 2006.11.14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 GS

#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 (권한)**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 다만, 주주제안권에 의하여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된 경우, 해당 후보를 포함시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.

### 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고 한다.)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1/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
#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

### 제6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7조 (부의사항)**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### 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 (통지의무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**제12조 (규정의 개폐)**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